



보도	2022.11.15.(화) 조간	배포	2022.11.14.(월)		
담당 부서	감독총괄국 검사총괄팀 검사분석팀	책임자	팀 장	조치형	(02-3145-8010)
		담당자	선임조사역	최준희	(02-3145-8013)
		책임자	팀 장	유명신	(02-3145-8290)
		담당자	선임조사역	이어진	(02-3145-8292)
	제재심의국 제재심의총괄팀	책임자	팀 장	이명규	(02-3145-7821)
		담당자	선임조사역	최승대	(02-3145-7818)
	법무실 은행팀	책임자	팀 장	정은정	(02-3145-5912)
		담당자	선임조사역	정연정	(02-3145-5914)
	금융상품판매분석국 소비자보호점검팀	책임자	팀 장	박철웅	(02-3145-8322)
		담당자	선임조사역	정지원	(02-3145-8338)

「FSS. the F.A.S.T.」 프로젝트 #04

- Fairness, Accountability, Support, Transparency -

금융감독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,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.

주요 내용

- □ 금융감독원은 그간 비조치의견서 확대 운영('15년), 제재심의 위원회 대심제 도입('18년), 검사 체계 개편('22년) 등 감독·검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습니다.
- □ 이번 「FSS, the F.A.S.T.」프로젝트를 통해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,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
 - o 아래와 같이 보다 **획기적**으로 관련 제도를 **개선**하고자 합니다.

1.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가능성 제고

- 1 매년 초 연간 검사계획 수립 시 정기검사 대상(예정)을 해당 금융회사에 안내하고, 현장검사 연장 시 미리 연장 기간 등을 서면 통보하는 등 검사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.
- 2 비조치의견서 회신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처리 협의체(유관부서 일괄 회의) 신설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겠습니다.
- 3 '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' 결과가 금융회사 연간 사업계획에 제 때 반영되어 소비자보호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태평가를 앞당겨 실시하고 결과도 신속히 통보하겠습니다.
- 4 검사결과 제재 공시사항의 검색 기능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는 한편,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도 유도 하겠습니다.

2.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강화

- 1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시 본인의 문답서 등에 대한 복사를 허용하고, 자료열람 가능시점을 앞당겨(제재심 개최 5영업일전 → 약 20일전)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2 제재심의위원회를 상황에 따라 수시로 추가 개최하고 진술인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진술인의 불편한 마음에 대해 배려하겠습니다.
- 3 '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서'에 변호사 조력권을 명시·안내하여 제재대상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
- 4 검사입증자료가 아닌 자료는 검사종료 후 감사부서 **직원의** 입회하에 반납하거나 즉시 폐기하는 등 수검직원의 **사적정보**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

"FSS, the F.A.S.T." 프로젝트 #04

Fairness, Accountability, Support, Transparency -

예측가능성 • 투명성 제고

- ☑ 검사 사전예고 실시
- ✓ 연초 정기검사 대상 사전 통보
- ✓ 검사연장시

 미리 서면 통보



-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
- ✓ 신속처리협의체 신설 (관련 부서 일괄 협의)
- ☑ IT분야 회신 속도 제고 (IT전문위원 위촉) _=(
- 소비자보호 정보 신속 제공
- ✓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신속 통보
- ✓ 금감원 제재공시 검색기능 개선



금융회사 권익보호 강화

- 방어권 보장확대
- ✓ 본인의 문답서 등 복사 허용 및 열람기간 확대
- ✓ 변호사 조력권 서면 안내



- 제재심 운영 개선
- ✓ 제재심의위원회 신속 처리(월 2회 ➡ 수시 개최)
- ✓ 진술인별 대기시간 최소화



- 사적정보 보호 강화
- ✓ 개인정보 반납・폐기 명확성 제고
- ✓ 디지털자료 수집 관련 참여권 보장

Ⅰ.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가능성·투명성 제고

1 검사업무의 예측 가능성 제고

1. 추진 배경

- □ 금융회사는 **정기검사 실시 1~2개월전** 사전자료 요구 또는 검사 사전예고통지를 통해 **검사대상 여부**, **검사일정** 등을 **인지**
 - 한편, 현장검사 중 부득이하게 검사연장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 검사종료 직전 회사에 검사연장 여부를 통보

2. 개선 내용

- □ 각 검사국은 매년초 **검사계획 수립** 시 정기검사 주기에 따른 **정기검사 대상**(예정)을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하고,
 - 검사를 연장할 경우 **검사 종료 최소 1일전**(정기검사 3일전) 연장 기간 등을 **서면 통보**하여 금융회사가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

3. 추진 일정

- □ 관련 통보 양식 개정 및 전산시스템 반영 이후 즉시 시행(연내)
 - '23년 검사계획 발표(2~3월) 시 정기검사대상 선정·안내

「비조치의견서」신속 처리

1. 추진 배경

- □ 금융당국은 창의적 금융활동 지원 등을 위해 **비조치의견서*** **제도**를 운영하고 있으나,
 - *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법령 등에 근거하여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
 - 금융회사의 신청내용이 **다수부서와 관련된 사안**이거나, **사실** 관계·쟁점이 복잡한 경우 소관부서 결정 및 회신에 **장기간** 소요

2. 개선 내용

- □ **다수부서 관련사안**인 경우 '**관련 부서장 협의체**'를 통해 금감원이 접수한 날로부터 **5영업일 내** 소관부서를 결정
- □ 소관부서 접수 후 **일정 기간 내**(예시: 20영업일) **처리가 지연**되는 경우 **비조치의견서 심의회***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 - * 금감원장 소속 자문기구로, 사실관계·쟁점이 복잡하거나, 여러 부서 업무와 관련되는 등 사유 존재 시 개최 가능
 - 또한 최근 비조치의견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IT 분야 회신의 적시성・충실성을 도모하기 위해 IT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

3. 추진 일정

□ 「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운영규정(내규)」 개정 후 즉시 시행(연내)

「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」신속 통보

1. 추진 배경

3

- □ 금감원은 매년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「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^{*}」를 실시
 - * 민원 처리노력,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노력, 내부통제체계 구축 적정성 등을 평가
 - 매년 **8~10월 중** 실태평가를 실시하여 익년 1월에 결과를 발표하고, 회사별 상세 평가결과는 **익년 3월에 회사 통보**
- □ 평가 결과를 3월경 통보함에 따라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개선 필요사항 등을 연간 **사업계획**에 반영하는 데 **제약** 발생

2. 개선 내용

- □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**조기에 실시**(매년 3분기 내)하고 평가결과를 **11월 이내에 공표**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
 - 금융회사 요청 시 회사별 상세 평가결과를 미리 설명하는 등 금융회사가 사업계획 반영 등을 통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

3. 추진 일정

□ '23년부터 즉시 시행('22년 결과도 최대한 신속히 통보예정)

제재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재내용 검색기능 개선

1. 추진 배경

- □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결과 적발된 **법규 위반사실** 및 이에 대한 **제재내용**을 홈페이지^{*}를 통해 **공시**
 - * 금감원 홈페이지 > 업무자료 > 검사·제재 > 제재관련 공시
 - 홈페이지 상 '금융회사명' 및 '제재조치 요구내용'으로 검색이 가능하나, 주제어(키워드) 검색 기능은 미비

2. 개선 내용

- □ **주제어* 검색기능**을 **추가**하여 금융회사 자율통제** 및 금융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
 - * (예) 은행법 제00조,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
 - ** 다른 금융회사의 법규 위반사실을 참고하여 당해 회사의 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준법감시역량 제고에 활용 가능

3. 추진 일정

□ 금감원 홈페이지 관련 기능 개선 후 즉시 시행(연내)

Ⅱ.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강화

1 제재대상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 확대

1. 추진 배경

- □ 금융감독원은 제재대상자(금융회사 및 관련 임직원)에 대한 제재 심의위원회 등 제재절차 진행 과정에서
 - 제재대상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, 위반행위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음
 - (제재 입증자료 등의 열람)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5영업일 전부터 심의회에 부의될 입증자료 등의 열람을 허용
 - (제재심의위원회 대심제도) 제재대상자(진술인)가 검사부서와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갖고,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·답변(반박/재반박)하는 심의방식
- □ 다만, 사안이 복잡한 경우 **한정된 시간** 내 제재 입증자료의 열람만으로는 자료의 내용을 **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고 불편**한 측면

2. 개선 내용

- □ 조치예정내용을 **사전통지**한 날(제재심 개최 약 20일전)부터 제재대상자에게 **본인의 문답서** 등에 대한 **복사**를 **허용***
 - * 본인의 문답서, 확인서, 진술서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복사를 허용하되, 개인정보, 경영상·영업상 비밀, 제3자의 권익과 관련된 자료 등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는 제한
 - 또한 제재 입증자료 등에 대한 **열람가능시점을 사전통지시로 앞당겨** 충분한 **방어권을 보장**

3. 추진 일정

- □ 제재 입증자료 열람·복사 관련 세부절차 마련 후 시행(연내)
 - ㅇ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선시행하고, 검사 및 제재 규정 등 개정 예정

2 진술인 대기시간 최소화 등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개선

1. 추진 배경

- □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통상 **한 달에 2회** 개최하고, 매 회의당 6 ~ 8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으나,
 - 제재심이 장시간 소요되는 대심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
 안건별 진술인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발생

2. 개선 내용

- □ 안건 내용 및 진술인 수 등을 고려하여 **당일 회의**에서 심의 하는 **안건 수**를 **적정 수준**(예: 1 ~ 2건)으로 **조정**하고, **수시** 또는 **연속회의를 개최***하는 등 회의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
 - * '22.10월중 목·금 연속회의(2회) 포함 총 6회 개최(↑4회)
 - o 순서에 따라 **진술인별 출석시간**을 세분화하여 대기시간 축소

3. **추진 일정** : 즉시 시행

제재대상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권 서면 안내 실시

1. 추진 배경

- □ 제재대상자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변호사와 함께 출석*하여 소명(변론)하는 등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,
 - * '22.1₅10월 기간 중 진술인이 출석·진술한 안건(51건)의 43.1%(22건)가 변호사와 함께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
 - 개별 제재대상자에게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절차가 마련되어
 있지 않아 절차상 보완이 필요

2. 개선 내용

- □ 제재대상자임을 고지하는 '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서'에 변호사 조력권을 명시하여 서면 안내할 계획
- 3. 추진 일정 : 서식 개정 후 즉시 시행

4 검사업무 중 수검직원 사적 정보보호 강화

1. 추진 배경

□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금감원 검사업무 과정에서도 수검직원의 **사적정보 보호 강화 의식 제고*** 및 이와 관련한 **절차**를 **강화**할 필요

* 금감원 직원은 매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을 이수하고 있음

2. 개선 내용

- □ 개인정보보호법, 신용정보법, 비밀유지에 관한 준수 의무 등 수검직원의 사적정보 보호와 관련한 검사원 관리 및 교육 강화
 - 검사입증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는 검사종료 후 감사담당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반납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검사반장이 관리
- □ **디지털 자료 수집** 관련 **규정을 마련**하여 검사자료 징구 시 자료수집 절차의 **공정성·투명성을 확보**하고, 수검직원 **권익 보호**

- 〈 예시 〉관련 내규 주요 내용 $\,-$

- (절차 사전 고지) 수검직원의 동의 등 자료수집 관련 절차 사전 고지
- (참여권 보장) 자료징구 시 임직원 참여권을 보장할 관련 요건 명확화
- (자료보안 강화) 자료 보관·폐기에 대한 절차 마련하는 등 보안 강화

3. 추진 일정

- □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에 대한 연수 등 관리·교육 시행(연내)
 - ㅇ 검사아카데미 등을 통해 교육 진행 및 관련 매뉴얼 개정
- □ 디지털 자료 수집 관련 내규 제정 이후 즉시 시행
- 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